

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번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두되고 있음
- 이에,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A	수질오염 방지시설	분뇨 처리 시설	산동면 성수리 715번지(환지 936) 일원	-	증)30,283.1	30,283.1		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

－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A	수질오염 방지시설 (분뇨처 리시설)	수질오염방지시설 (분뇨처리시설) 신설 A=30,283.1㎡	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 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·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 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함

3. 관련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⑤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⑦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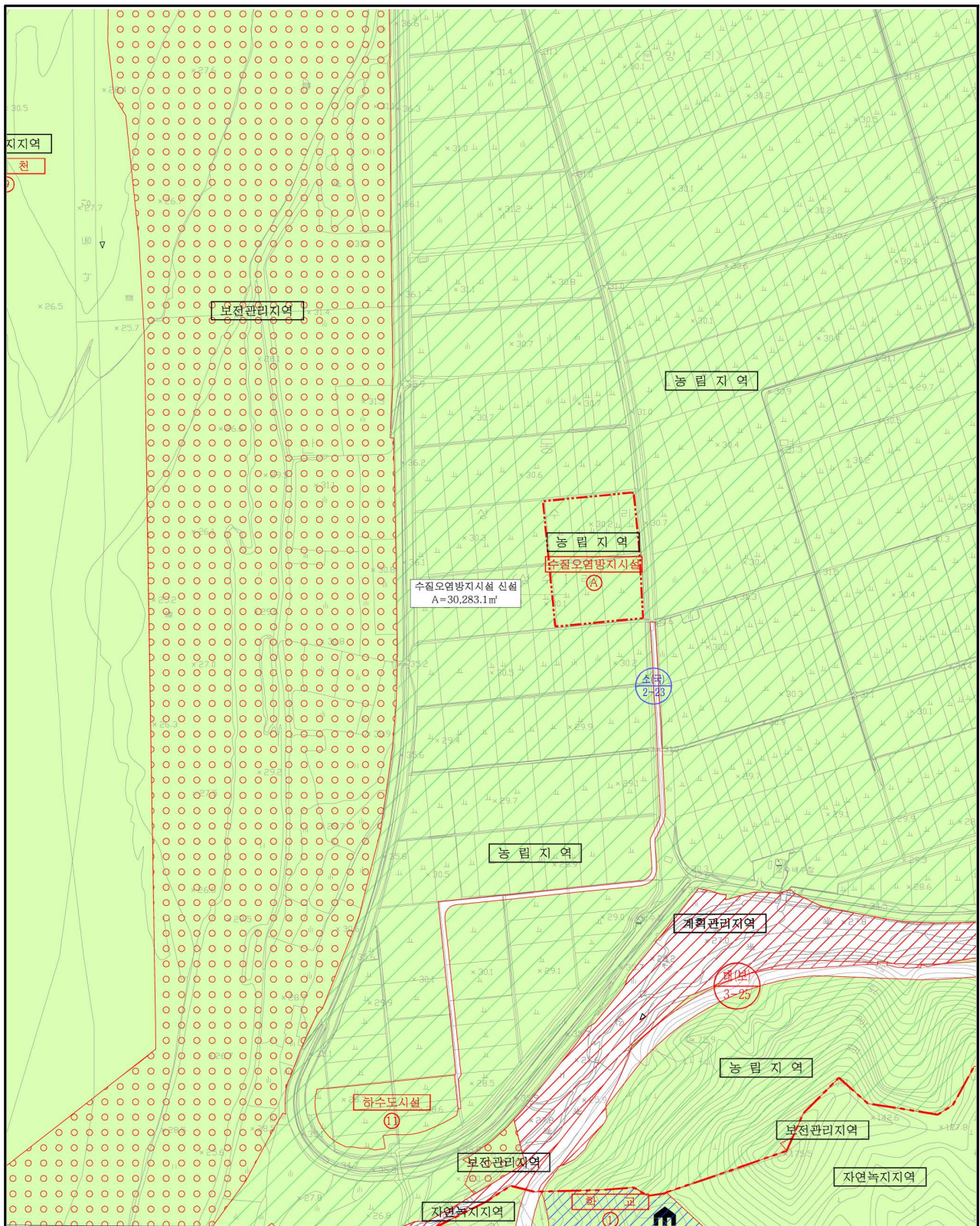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거. 수질오염방지시설

4. 붙임

1)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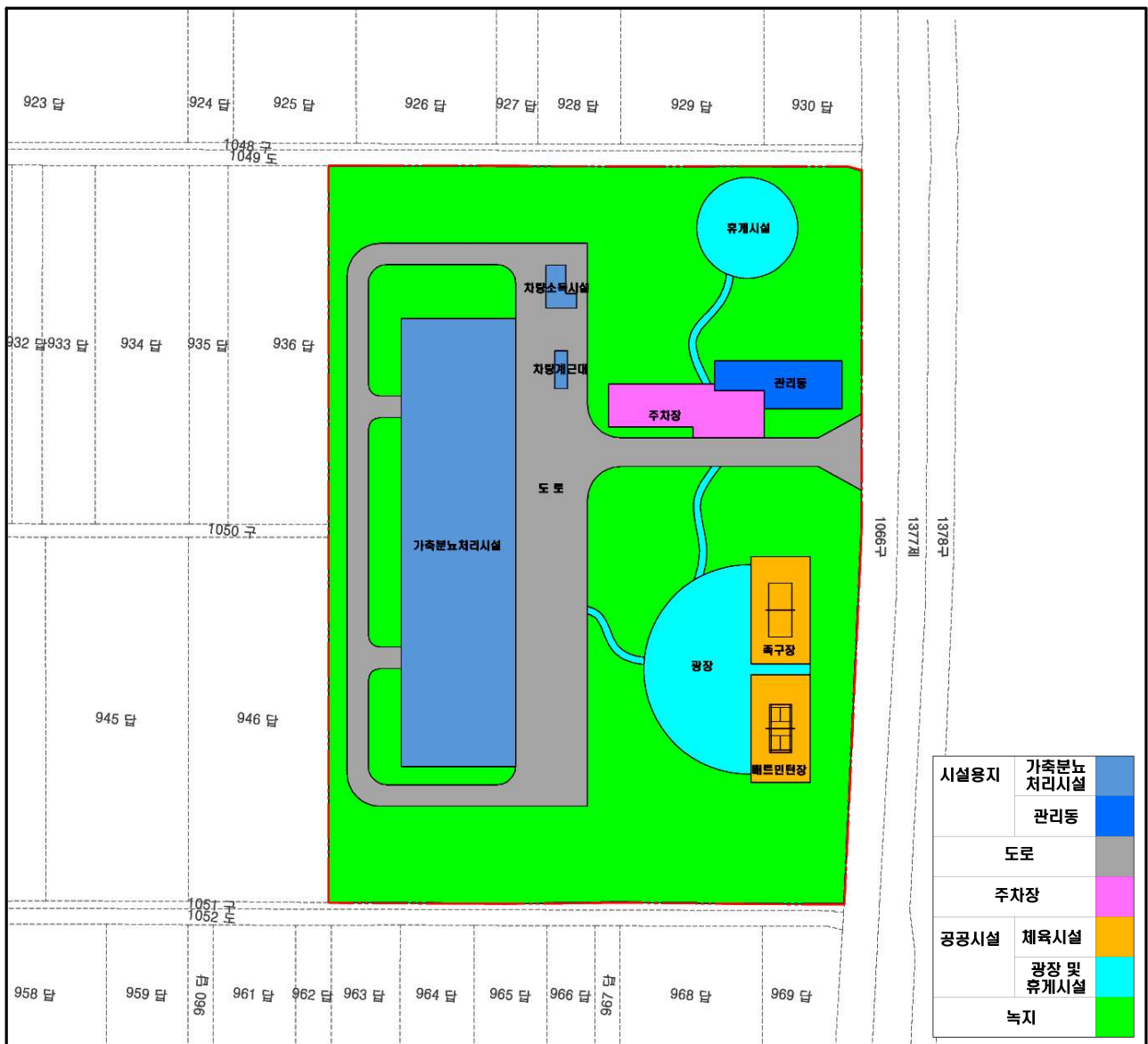


2) 도시관리계획 결정도“안” :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 결정



3)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30,283.10	100.0	
시설용지	소 계	4,525.71	15.0	
	가축분뇨처리시설	4,116.00	13.6	가축분뇨 처리시설, 차량소독시설, 차량 계근대
	관리동	409.71	1.4	관리동
도로		5,289.00	17.4	
주차장		554.00	1.8	11면 (법적주차대수 해당없음)
공공시설	소 계	3,233.00	10.7	
	체육시설	990.00	3.3	족구장, 배드민턴장
	광장 및 휴게시설	2,243.00	7.4	광장, 휴게시설
녹지		16,681.39	55.1	



4) 건축배치계획도 “안”

